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약물 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약물의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45조제2항·제3항·제4항 신설).
- 약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을 운전면허의 결격 사유에 추가하고(안 제82조), 약물 측정에 불응한 경우를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에 추가함(안 제93조).
-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안 제148조의2제5항), 약물 측정 불응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안 제148조의2제6항), 2회 이상 약물 운전 또는 약물 측정 불응을 한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148조의2제4항).

개정안		내 용
제45조	제2항·제3항·제4항	약물 측정에 대한 근거 및 절차
제82조제2항	제3호 가목	약물 운전 또는 약물 측정 불응 및 사상자 발생 후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면허취소부터 5년간 운전면허 결격
	제3호 나목	약물 운전 또는 약물 측정 불응 및 사망자 발생 시 면허취소부터 5년간 운전면허 결격
	제5호	2회 이상 약물 운전 또는 약물 측정 불응 및 교통사고 발생 시 면허취소부터 3년간 운전면허 결격
	제6호 라목	2회 이상 약물 운전 또는 약물 측정 불응 시 면허취소부터 2년간 운전면허 결격
	제6호 마목	약물 운전 또는 약물 측정 불응 및 교통사고 발생 시 면허취소부터 2년간 운전면허 결격
제93조제1항	제4호의2	약물 측정 불응 시 운전면허 취소
제148조의2	제4항제1호	약물 운전 후 10년 내 다시 약물 운전 시 2년 이상 징역 등 부과
	제4항제2호	약물 측정 불응 후 10년 내 다시 약물 측정 불응 시 1년 이상 징역 등 부과
	제5항	약물 운전 시 5년 이하 징역 등 부과
	제6항	약물 측정 불응 시 5년 이하 징역 등 부과

Ⅱ. 검토의견

1. 약물 운전 및 약물 측정의 대상 차종 관련(안 제45조, 제93조제1항제4호, 제148조의2제4항·제5항)

- 안 제45조제1항(중전의 제45조 제목 외의 부분)은 약물 운전 금지 대상을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 자동차등 및 노면전차’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설되는 안 제45조제2항과 안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한 제93조제1항제4호 및 제148조의2제4항·제5항에는 별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규율 대상을 통일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에 대해 명시할 필요가 있음.

구 분			대상 차종	내 용
현행법	제45조	—	자동차등(<u>개인형 이동장치 제외</u>), 노면전차	과로, 질병, 약물운전 등 금지
개정안	제45조	제2항	자동차등, 노면전차	약물 측정에 대한 근거
	제93조	제1항 제4호	자동차등	약물 측정 불응 시 운전면허 취소
	제148조의2	제4항 제5항	자동차등, 노면전차	약물 운전 또는 약물 측정 불응에 대한 벌칙

2. 벌칙의 명확성 관련(안 제148조의2)

- 안 제148조의2제4항은 약물 운전(안 제45조제1항 위반) 또는 약물 측정 불응(안 제45조제2항 위반)을 2회 이상 한 경우에 대한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벌칙을 부과할 때에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수범자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안 제148조의2제4항의 경우 ① 안 제45조 제1항 중 약물 운전 금지 의무 또는 ② 안 제45조제2항에 따른 약물 측정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그 해석상 안 제45조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만 가중처벌이 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될 여지가 있어 벌칙 부과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짐.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제148조의2(벌칙) ① ~ ③ (생략) ④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u>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거나</u>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u>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거나</u>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u>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u>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생략)	제148조의2(벌칙)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제45조제1항(<u>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u>)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개정안과 같음)

○ 참고로 안 제148조의2제6항은 약물 측정에 불응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하는 것인데, 이와 유사하게 음주 측정 불응에 대해 규정한 현행법 제148조의2제2항¹⁾은 형벌의 하한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 형식의 체계상 안 제148조의2 제6항의 경우에도 하한 규정을 두는 방안을 추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적용례 신설 필요(부칙 관련)

- 개정안은 약물 운전 및 약물 측정 불응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취소사유와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용례를 두지 않고 있는데, 그 적용시점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어 보임.

개 정 안	수 정 의 견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생 략)	제1조(시행일) (개정안과 같음)
<u><신 설></u>	<u>제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u>
<u><신 설></u>	<u>제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u>
<u><신 설></u>	<u>제4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148조의2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u>

- 그밖에 기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 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전문위원 김 성 완)